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6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준환·홍기원·안호영
김원이·전용기·송재봉
안도걸·박홍배·문정복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상황 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실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선박·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기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집결지, 이동지역 및 이동방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의 투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 ⑦ (생략)	<u>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 의 투입</u> ③ ~ ⑦ (현행과 같음)
------------	---